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93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2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새날 의원 외 4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3호), 이경숙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6호)을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2023.12.20.)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이새날 의원 외 46명, 이경숙 의원 외 16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

게 확산하는 반면 어린이 보호, 사업의 종류 등 현행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 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마. 안전이용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바.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아. 그 밖에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 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를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시장은 시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안전이용기준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의식개선”을 “의식 개선”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신 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착용하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등을 지켜 ----- 하여야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p>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생략)

1. ~ 3. (생략)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
(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의식 개선-----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운행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

제12조 (생략)

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
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